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(PLS)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

- 1.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(PLS, Positive List System)가 시행되었습니다.
- 2.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(PLS)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고시 제2021-54호, 2021.6.29.)에 따라 소, 돼지, 닭, 우유,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.01 mg/kg 이하를 적용 (다만, 성장보조제,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)하는 제도입니다.
- 3.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그 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,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, 축산농가에 대해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교육·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.
- 4. 이에,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물 PLS 수행 기관·부서에서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, 소속기관·담당부서, 관련단체·농가, 교육기관, 동물병원, 동물약품 판매상 등에도 동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5. 아울러, 아래 사향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농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,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래 -

- 가. 대상축산물: 소, 돼지, 닭, 우유, 달걀
- 나.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: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.3.8), [별표 5] 및 [별표 8] 등
- 다.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
 - 1)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 · 보관
 - 2)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
 - 3) 「축산법」, 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
 - 4)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, 사용방법·용량, 휴약기간(시간)을 반드시 확인
- 라. 교육·홍보 지원: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, 소규모농·고령농· 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·홍보 강화
 - * 축산물 PLS 홍보영상·리플릿·포스터 활용(농식품부 누리집>맞춤정책정보>소비자>축산물PLS)
- 붙임 1.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· 개정내역 1부.
 - 2.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내역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관인생략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전국 시도 및 시군구, 농협경제지주 대표이 사, (사)전국한우협회장, (사)한국낙농육우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, 대한양계협회장, (사)한 국육계협회장,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장, (사)한국동물약품협회장, 대한 수의사회장,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

농축산위생품 전결 2024. 2. 16.

시무관 **이미순** 질팀장 **허종수**

협조자

시행 농축산위생품질팀-889 (2024. 2. 16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978 팩스번호 044-868-0660 / leems25@korea.kr / 비공개(5)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